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251호, 2023. 3. 21. 제정·공포, 2024. 3. 22.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등 보존 영향 검토 절차와 행위기준의 수립을 규정하고, 지정해야 할 자연유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허가 관련 서식과 첨부 서류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0.. ~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등 보존 영향 검토 절차) ①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 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법 제10조제4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1항과 제2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인허가 행정기관은 영 제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견

을 들은 관계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10조제4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인허가 행정기관에 제1항과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검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조사 항목·내용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결과
2. 제1호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행위기준안 및 이를 작성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3. 제2호의 행위기준안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천연기념물등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의 의견
4. 그 밖에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행위기준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문화재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연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자연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자연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③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 전단에 따른 행위기준의 고시일부터 10년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지형의 변화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기준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행위기준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조사보고서) 영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명승,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지정해야 할 자연유산 등에 대한 보고) 영 제14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해야 할 자연유산이 있으면 별지 제3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3. 자연유산의 연혁, 특징, 서식지·번식지·도래지·군락지·사육지,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자연유산 도면자료
5. 자연유산에 대한 학술·고증자료
6. 자연유산 사진자료
7. 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9. 자연유산 보존·관리·활용계획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해당 자연유산 소유자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제6조(허가신청서)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6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6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된 구역 등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6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탁본, 촬영 등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제4호와 같은 항 제5호 및 영 제16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나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고시된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는 행위 등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건설공사 등 땅깍기·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

⑤ 법 제17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에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서) ① 법 제18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③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국외 반출·수출 허가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반출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험증서 사본
2. 소유자 동의서
3.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험증서 사본
2. 소유자 동의서
3.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천연기념물의 전시 필요성 및 예상되는 전시 효과

2. 해당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3. 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의 적정성 여부
4. 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법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
5. 포장, 이송 시의 안전성 여부
6. 반출 허가 또는 반출 기간 연장 허가 신청자의 자연유산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
7. 그 밖에 보험가입 등 반출 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구비 여부

⑥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예정일 2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연구 및 전시) 계획서
2. 현상변경(표본·박제) 허가서 또는 인공증식 증명서 사본
3.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천연기념물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⑦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⑧ 시·도자연유산의 반출 허가와 반출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영 제2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21조제1항제5호 및 영 제2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1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허가사항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21조제1항제7호 및 영 제2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반입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출했던 천연기념물을 반입하려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반출했던 천연기념물을 반입하려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

⑦ 법 제21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⑧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 부검 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⑨ 법 제21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2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

한 조치 신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⑩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자연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위치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자연유산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범위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④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개 제한의 출입 허가)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범위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유산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에 필요한 경우
2. 자연유산 수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범위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단체의 지정서 등)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천연

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의 지정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25조 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2.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호물(소방, 전기·가스 안전시설 등 방재시설을 포함한다)의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3.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주변 환경의 보호
4.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관람·체험·전시·홍보 및 그 활동의 안전관리
5. 그 밖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

제14조(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 등) ①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이 수립하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염병의 예방접종
2. 질병진단 및 기생충 구제

3. 방역 및 방역관리대장

4. 그 밖에 질병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②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제1항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시행한 때에 해당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질병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질병 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에게 운반, 약물 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이하 “치료”라 한다)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운영자의 치료결과 보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운영자가 조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동물을 치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4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조난·질병등 동물 치료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동물이 폐사하였을 때에는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 치료 경비를 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천연기념물인 동물 치료 경비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수의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의사회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 치료 경비 청구를 접수하면 치료 경비 내역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된 후 지급하고,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취소 통지)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또는 취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구역에 반입·반출허가) ①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리구역에 반입·반출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해당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출 허가를 할 수 있다.

1.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천연기념물로서 보호 가치가 없는 경우
2. 관리구역 외에서 개최되는 품평회 등 홍보를 위하여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일정기간 반출하는 경우
3.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분산 사육 및 위탁) ①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종의 보존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분산 사육하여야 한다.

1. 해당 종의 사육두수가 관리구역의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경우
2. 관리구역 주변에 동물 질병에 감염되거나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의 이동·접근을 예상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발생 등에 대비한 일정 개체나 유전자원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분산 사육을 하는 해당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그 동물에 대하여 해당 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산 사육의 일부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연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국공립 연구기관
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
4.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생물자원관
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7.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도자연유산 지정 등의 통지)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34조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자연유산의 지정에 관한 통지

가. 명칭, 지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물·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구역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라. 유래, 전설 및 현상에 관한 설명

마. 크기 및 형태

바. 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

사.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자연유산의 지정 해제에 관한 통지

가.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해제의 사유 및 연월일

3.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도자연유산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
에 관한 통지

가. 명칭 및 수량

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변경의 사유 및 연월일

라. 변경 전후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마. 사진 및 도면

4.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도자연유산의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
에 관한 통지

가.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의 연월일, 원인, 경위 및 현황

라.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의 내용

마. 사진 및 도면

제22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보급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① 법 제

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후계목 인증기관은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시료채취,
증식, 보존,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임업진
흥원

3. 「산림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림생태원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물의 증식 등에 관련된 기관

② 제1항의 인증기관이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보급을 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병해충 등으로 인하여 증식 등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지정된 개체 수가 적은 식물

2. 생육·입지환경 등이 악화되거나 주변 지역의 개발 등으로 생육입지의 교란 위험이 높은 식물

3. 노령으로 쇠퇴 징후가 현저하거나 개화·결실 등이 어려운 식물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물

③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후계목 선발 및 보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계목이 그 모수의 형질·수형 등과 유사하며 생장이 우수하거나 모수 보다 그 수형·자태 등이 뛰어날 것

2. 후계목이 토양균·병해충 감염 등이 없거나 그 줄기·가지·뿌리 등에 생리적·물리적 피해가 없을 것

3. 후계목이 수형·수간·뿌리가 균형을 이루고 가지와 잎이 충실하거나 활착과 생장이 좋은 식재의 형질조건을 구비할 것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후계목 육성 현장점검 및 기록관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계목 식재

가. 모수의 생육지에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모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의 공간일 것

나. 모수의 주변 공간에 식재할 수 있되, 모수의 수형이 발현될 수 있도록 개체 밀도 등을 고려하여 거리를 조정할 것

2. 후계목 점검 및 기록관리

가. 후계목의 점검 및 기록관리는 모수의 점검 및 기록과 그 관리방법 등에 준하여 실시할 것

나. 소유자등은 후계목의 생육실태 등을 매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할 것

3. 후계목 활용

가. 모수의 가치상실로 해제된 공간 복원에 활용할 것

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식수·축제 행사 및 주민의 지역 활동 등에 활용할 것

다. 우수성 및 가치가 떨어진 후계목의 민간분양에 활용할 것

⑤ 그 밖에 후계목 육성·보급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공개동굴의 실태조사) ① 천연기념물로서 대중에게 개방된 동굴(이하 “공개동굴”이라 한다)의 소유자등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매년 공개동굴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동굴 내부환경 : 관람객 입굴에 따른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라돈, 수질 등의

변화

2. 동굴 외부환경 : 지형·지질의 특성, 동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분석
3. 미지형과 동굴생성물의 보존상태(생장 또는 오염 및 훼손여부), 동굴 생물
의 변화
4. 녹색오염, 흑색현상, 박리현상의 실태 확인 및 발생 원인 파악, 원상 복원
및 방지대책 제안

② 공개동굴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개동굴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24조(보조금)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37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 교부를 신
청한 자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법 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39호서식의 국고보조
사업 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

다.

제25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 ① 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보존·관리, 변경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은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에는 해당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임시천연기념물 또는 임시명승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6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목록)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목록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등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

(앞쪽)

대상 자연유산	종 류	명 칭
사업 개요	사업명	
	위 치	자연유산 외곽 경계로부터의 거리 m
	내 용	
자연유산 입지 현황 분석 (뒤쪽 참조)	해당 자연유산의 특성	
	해당 자연유산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	
	그 밖의 자연유산 특이사항	
검토항목		해당 여부
1. 해당 천연기념물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2. 해당 천연기념물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3. 해당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4. 해당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5. 해당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6. 천연기념물등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7. 천연기념물등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8. 천연기념물등이 서식·번식·도래·군락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등의 동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동지나 알 또는 식물의 열매나 씨앗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9.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천연기념물등의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종합의견 (영향 여부에 대한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영향 여부: [] 있음, [] 없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가 천연기념물등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자연유산 입지현황 분석란 작성방법

(이 내용은 건축 허가신청서를 보고 담당 공무원이 사전 작성하며 관계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내 용	작성 방식
해당 자연유산의 특성	자연유산의 유형(동물·식물·지질 등), 자연유산 이전 여부, 향후 복원가능성 등
해당 자연유산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	자연유산이 있는 지역의 현황(지형, 교통, 도로 여부), 입지, 자연유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여건(용도구역, 도시계획 등), 주변에 이미 조성된 마을 현황, 주거환경 등
그 밖의 자연유산 특이사항	그 밖에 사업신청지와 자연유산의 관계(정면, 배면, 시야를 가리는지 여부), 주변의 기존 현상 변경 등의 허가 여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대상 자연유산			
조사자	성 명		전공 분야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자연유산 종류				
	자연유산 명칭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연혁·유래 및 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검토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자연유산>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자연유산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검토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작성 요령

1. 자연유산 종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혹은 다른 종류(시·도자연유산 등)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 지정 종류에 관한 의견을 적습니다.
2. 자연유산 명칭: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적절한 지정 명칭을 검토하여 제시하되, 시·도지사 등이 제출하는 의견이 있으면 참고하여 검토합니다.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자연유산의 인문적·지리적 입지 현황과 역사문화환경을 조사하여 적습니다.
4. 연혁·유래 및 특징: 자연유산의 주요 연혁·유래·전설 및 특징 등에 관하여 문헌 및 고증자료 등에 근거하여 적습니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지정 가치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자연유산의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와 자연유산의 완전성 구비 여부, 다른 유사 자연유산과의 차별적인 특징 등을 검토하여 적습니다.
 - 근거기준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해당 지정기준 항목을 밝혀 적습니다.
6.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 및 범위 설정에 관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자연유산 보존정비 및 활용방안, 소유자등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의견을 적습니다.
7. 자연유산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기준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8.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자연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그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방안에 관한 착안사항을 적습니다.

※ 공통사항

각 항목에 적을 내용이 많으면 간결하게 개조식(個條式)으로 적고, 세부 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항목의 내용 후단에 “세부 내용 별첨 참조” 라 적습니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자연유산 구분	지정 종류		
	유형/종목		
대상 자연유산 현황	명칭	한글	한자
		영문	
	소재지		
	수량/크기 ※ 상세내용은 3쪽~5 쪽 중 해당 쪽에 적습 니다.	해당 자연유산	
		보호구역	
		보호물	
	현재 용도/기능		
	소유자(단체)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연혁/유래/특징			
서식지/번식지/			
도래지/군락지/			
사육지			
관리단체(안)	단체명		대표자
	선정사유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 관계전문가의 조사 의견 및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 자연유산의 연혁·특징, 서식지·번식지·도래지·군락지·사육지,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 자연유산 도면자료 - 자연유산에 대한 학술·고증자료 - 자연유산 사진자료 - 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지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 자연유산 보존·관리·활용계획 -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 해당 자연유산 소유자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2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CD(1장)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등본 - 건물등기부 등본 - 토지(임야)대장 등본 - 토지등기부 등본 등

작성 요령 및 첨부 유의사항

1. 지정 종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종류를 적습니다.
2. 유형/종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습니다.
(예) 동물/동물군, 식물/노거수, 자연경관/산지)
3. 명칭
 - 가. 자연유산의 성격·유형 등 그 대표성·상징성을 나타내거나 일반에 널리 알려진 명칭을 부여합니다.
 - 나. 순수한 고유 명칭만으로는 일반인이 해당 자연유산이나 소재 지역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유 명칭 앞에 행정 구역명 또는 고유한 지명을 병기합니다.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자연유산 지정 명칭의 부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4. 소재지
 - 가. 행정구역상의 소재지와 지번(地番)을 적습니다.
 - 나.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숫자가 앞선 지번이나 가장 핵심구역으로 판단되는 지번을 대표 지번으로 적고 그 뒤에 ‘외’ 또는 ‘등’ 을 붙입니다.
5. 수량/크기: 해당 자연유산(지정구역), 보호구역 및 보호물을 종, 서식지·번식지·도래지·군락지, 건축물, 구조물 등으로 구분하여 그 성격에 맞게 수량(개체 수 등) 및 크기(면적 등)를 적습니다.
6. 현재 용도/기능: 현재 쓰이고 있는 용도, 기능 및 역할 등을 적습니다.
7. 소유자(단체): 해당 자연유산(지정구역)의 소유자(단체)의 성명(명칭) 및 주소를 적습니다.
8. 연혁/유래/특징
 - 가. 자연유산의 연혁, 유래 및 특징에 대하여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개조식(個條式)으로 간결하게 적습니다.
 - 나.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3. 자연유산의 연혁·특징, 서식지·번식지·도래지·군락지·사육지,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에 적습니다.
9. 서식지/번식지/도래지/군락지/사육지
 - 가. 자연유산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군락지 또는 사육지에 대하여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개조식(個條式)으로 간결하게 적습니다.
 - 나.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3. 자연유산의 연혁·특징, 서식지·번식지·도래지·군락지·사육지,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에 적습니다.
10. 관리단체(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자연유산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적습니다.
11.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자연유산 지정 가치 및 특징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간결하게 적고, 반드시 지정기준상의 근거 항목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 1)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중요한 고유성,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 자연미, 저명 인물 연관성 등)
 - 2) 완전성 구비 여부 및 다른 유사 자연유산과의 차별적 특징 등
 - 나.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3. 자연유산의 연혁·특징, 서식지·번식지·도래지·군락지·사육지,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에 적습니다.
12. 첨부 유의사항
 - 가. 첨부서류 제4호의 도면자료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을 말합니다.
 - 나. 첨부서류 제5호의 자연유산에 대한 학술·고증자료는 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을 말합니다.
 - 다. 첨부서류 제6호의 자연유산 사진자료는 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및 2,000×1,500 픽셀 이상의 디지털 파일을 말합니다.
 - 라. 첨부서류 제7호의 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은 각각 위치도, 지적도(축척 5백분의 1 이상 ~ 1천5백분의 1 이하), 수치도(축척 5천분의 1), 지형도(축척 5백분의 1 이상 ~ 1천5백분의 1 이하),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셰이프(SHP)파일을 말합니다.
 - 마. 첨부서류 제11호의 해당 자연유산 소유자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해당 종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증여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구입한 경우 매매사본 등 정당한 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면적: m²)

[illegible]

(면적: m^2)

[illegible]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m²)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정면적 (m ²)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m²)

연번	명칭	구조/ 형식/ 형태	크기/ 수량	토지면적	보호물면적	소재지 /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자연유산의 인문환경 및 현상·관리 상황

구 분	내 용	비 고
입지 및 역사 문화환경		
현재의 보존 상태 및 보호·관리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보수·정비 및 현상변경 이력		
부속시설물(주변) 현황		
소재지 및 주변의 천 연기념물등 분포 현 황		
그 밖의 사항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대상 자연유산	명 칭					
	종 류			수 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 · 보호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현상변경 유형	[] 수리·정비·복 구·보존처리· 철거하는 행위	[] 포획·채취(치료 목적의 행위는 제 외합니다)·사 육·도살·인공증 식·인공복제·위 치추적기부착·방 사(구조·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표 본·박제·매장· 소각하는 행위 *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수 입·반입 신고 된 것을 포함합 니다.	[] 건축물 등을 신 축·개축·증 축·이축·용도 변경(지목변경 의 경우는 제외 합니다)하는 행 위	[] 수목을 심거나 제 거하는 행위	[] 토지 및 수면의 매 립·간척·땅파 기·구멍뚫기·땅 깎기·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 기오염물질·화학 물질·먼지·빛·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오수·분뇨·폐 수 등을 살포· 배출·투기하는 행위	[] 동물을 사육하 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 토석·골재·광 물 및 그 부산 물·가공물을 채취·반입·반 출·제거하는 행위	[] 광고물 등을 설 치·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 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신청사항	위 치				
	내 용				
	사 유				
참고 사항	※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 수	소 요 경 비	원	재원	
	완 료	그 밖 의 사 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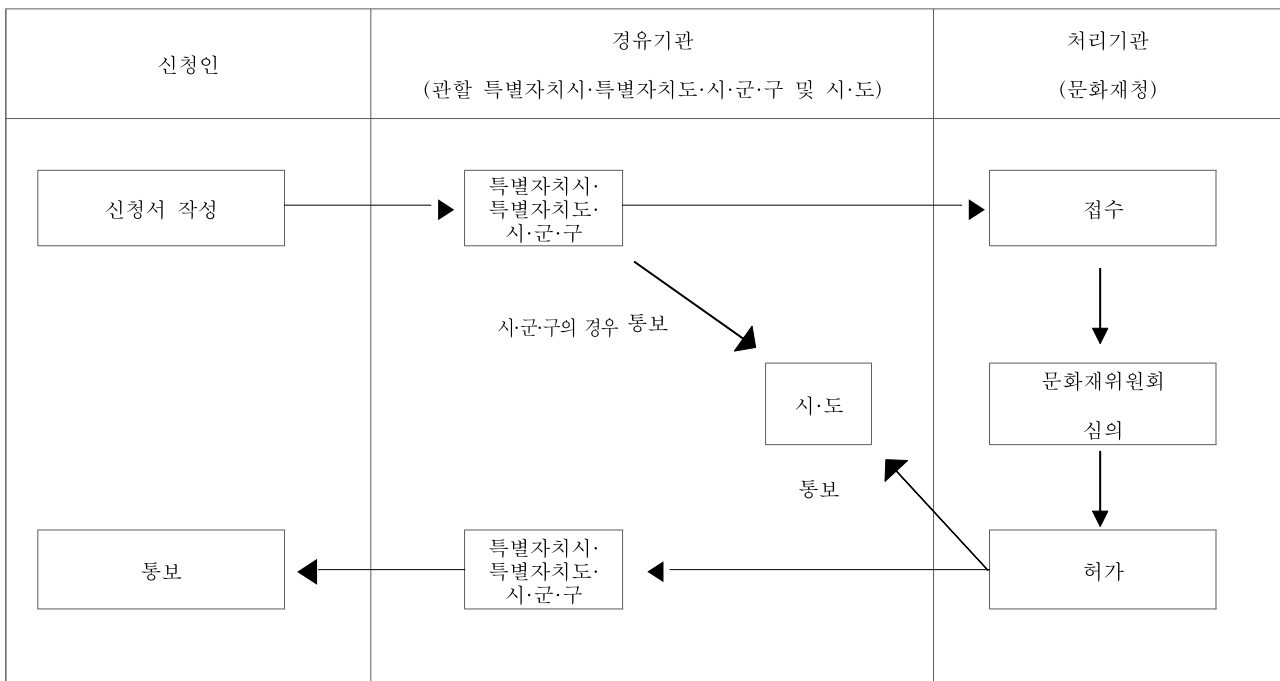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수 수 료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대 상 자 연 유 산	명 칭		
	종 류		
	도래지 등		
포획·채취·반출 사유			
포획·채취·반출 부분		수 량	
포획·채취·반출예정 연 월 일			
포획·채취·반출 방법		반출지	
기 술 담 당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재 반 입 여 부			
그 밖 의 사 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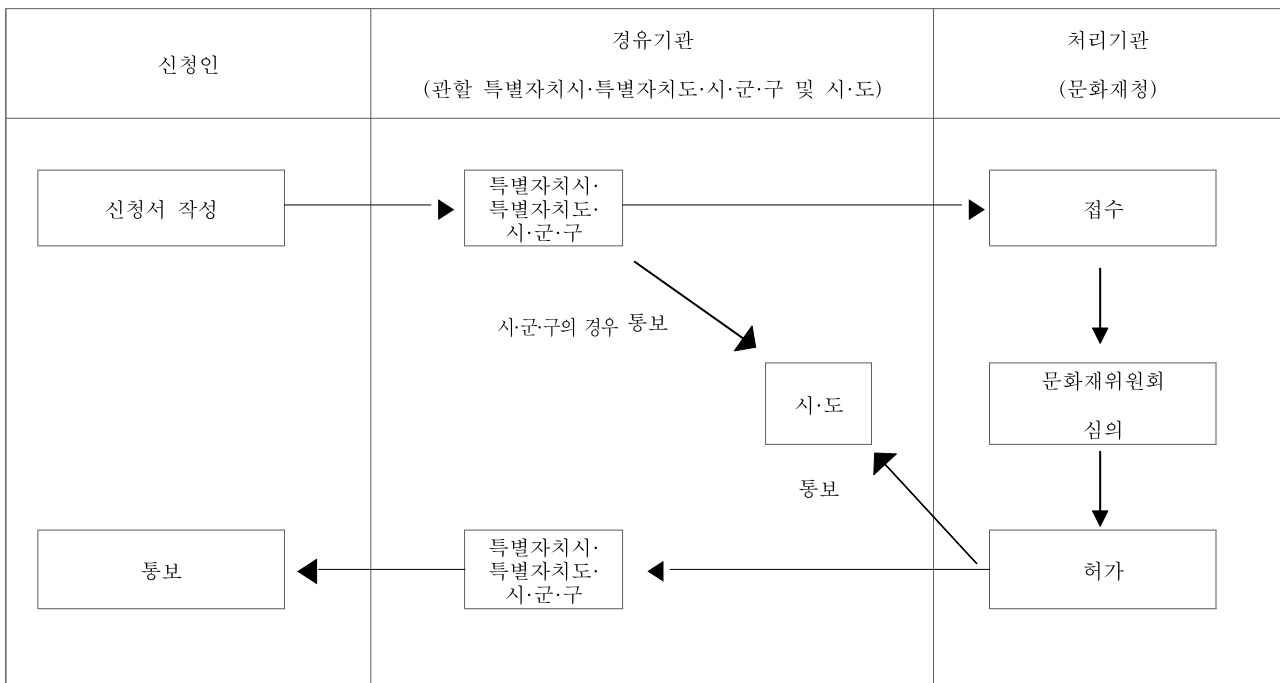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 행위 계획서	수수료 없 음
------	----------	------------

처리 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탁본·촬영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대상 자연유산	명 칭		
	종 류		
	소재지(보관 장소)		
신 청 사 유			
신 청 구 분		수 량	
작업예정기간	. . 부터 . . 까지	(일 간)	작업방법
작업을 하려는 사람	성 명	주 소	
기술담당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요 경 비		재 원	
그 밖의 사 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탁본·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 행위 계획서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검 토	→	결 정	→	통 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휴대전화:)							
대상 자연유산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 · 보호물									
행위유형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자연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자연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자연유산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이상의 땅파기 행위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자연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질·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 건설공사 등의 행위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자연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 써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자연유산이 서식·번식·도래·군락하는 지역에서 자연유산의 등지나 알에 표시하거나 그 둥지나 알 또는 식물의 열매나 씨앗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자연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신청사항	위 치								
	내 용								
	사 유								
참고사항	※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착수 및 완료 예정 연 월일	착수		소요경비		원 재원				
	완료		그 밖의 사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땅깍기·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신청 행위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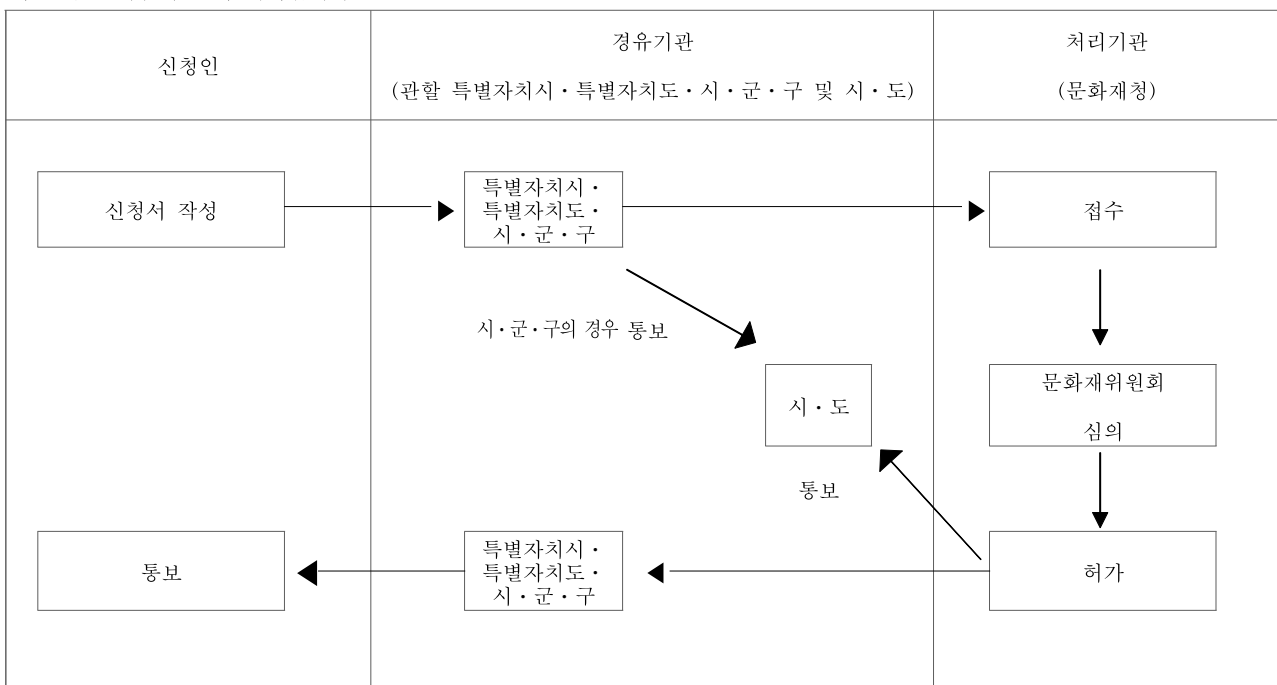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유의사항

- 첨부서류 제1호의 행위 계획서가 건축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개요(용도·위치·대지면적 등),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 사항,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주차장 규모 등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휴대폰:)				
대상 자연유산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보호물					
당초 허가사항	허가번호		허가내용		
변경사항					
변경사유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수				
	완료				
그 밖의 사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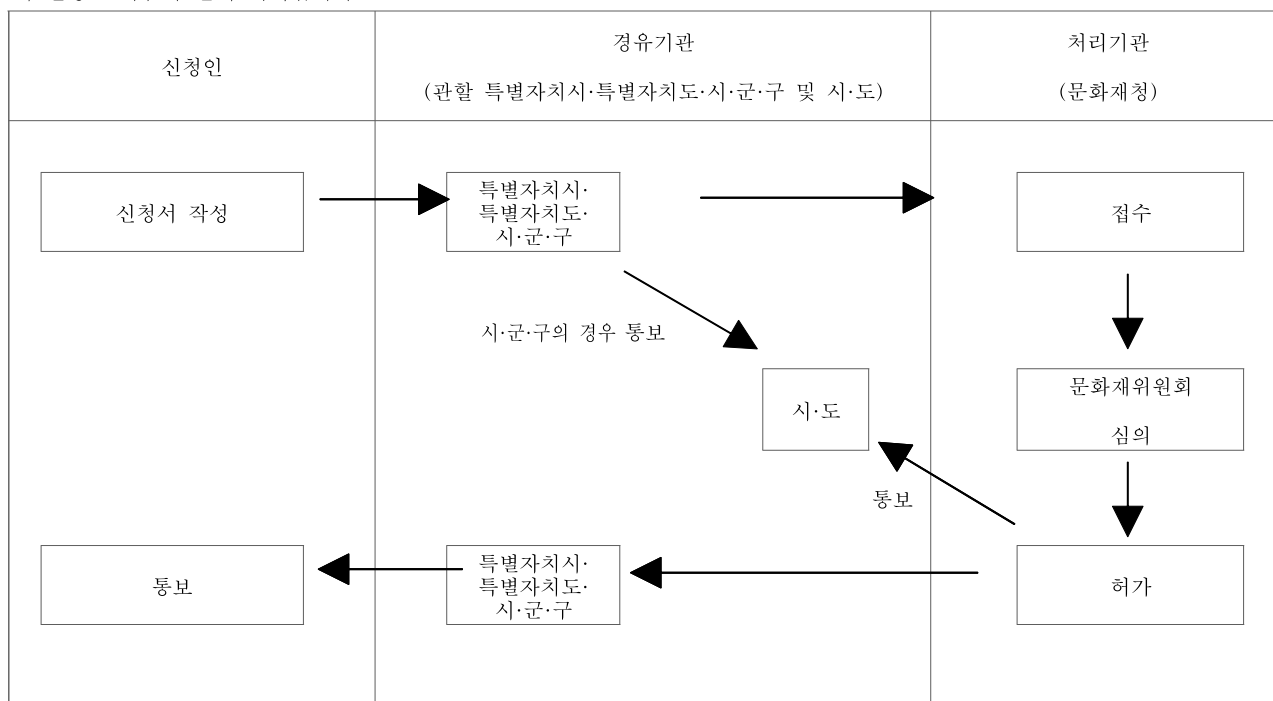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자연유산	종 류	명 칭	
	소재지(보관 장소)		
허가 사항	개 요		
	위 치	(자연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	
	내 용		
	기 간		
허가 조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현상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 인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나.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앞쪽)

당초허가번호 :
변경허가번호 :

허가 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자연유산	종 류	명 칭
	소재지(보관 장소)	
허가내용	개 요	
	위 치	
	기허가 내 용	
	변경허가 내용	
허가기간	당초기간	
	변경기간	
허가조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 인		

210mm×297mm[백상지(80g/㎡)]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나.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

구분	허가번호	허가받는 자		대상 자연유산			허가사항			허가기간	착공일자	비고
	허가일자	성명	주소	종류	관리번호	명 칭	사업명	위 치	내 용	기간연장	완료일자	

작성방법

- ※ 구분란에는 허가인 경우 "1번", 변경허가인 경우 "2번"으로 표기함
- ※ 기간연장란은 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연장된 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임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 청 인	성 명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천연기념물 명칭		유형	수량		
규격			보관 장소		
반출목적					
반출대상국가			보 험 방 법		
반출예정연월일			반입예정연월일		
반출 담당자	성 명				
	주 소				
반출 중 보호방법					
반출에 관한 협약 내용					
그 밖의 사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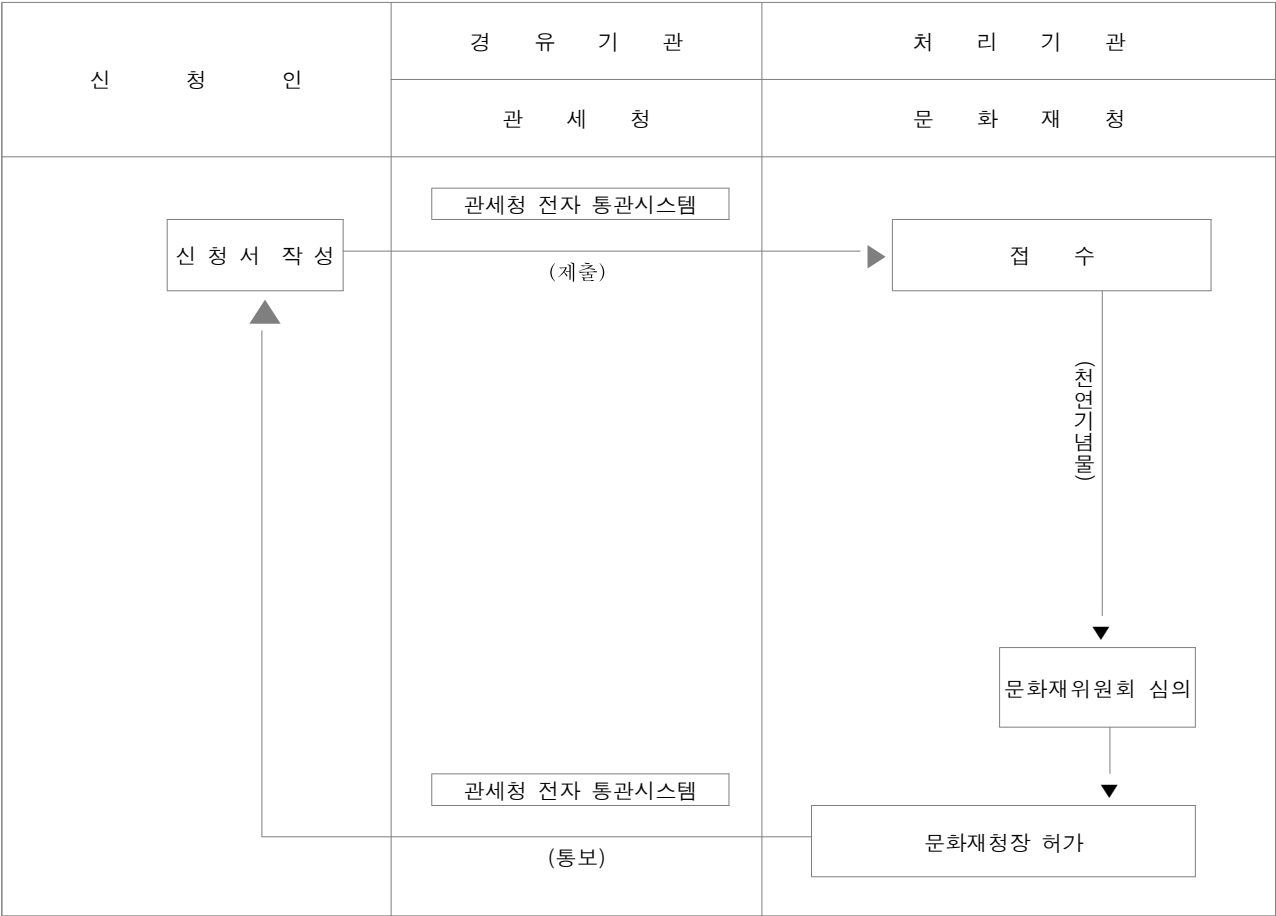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수수료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합니다) 1부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신청 목록

명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기관명)	
	주소	
대상 천연기념물	유형	명칭
	규격	수량
허가사항	개요	
	반출국(장소)	
	반출기간(전시기간)	
	전시명	
허가조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행정사항

- 관세청 수출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요건승인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청서의 [허가번호 및 연월일]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국외 반출된 천연기념물이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문화재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나.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에 따라 국외 반출된 천연기념물의 현황 및 보존·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국외 반출된 천연기념물을 허가된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않은 자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천연기념물을 몰수합니다.
 - 국외 반출된 천연기념물을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내 반입 신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고서의 [허가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 신고기간 경과 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 목록

명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천연기념물 명칭		유형	수량
허가번호 및 연월일			
당초의 반출·입 예정 연월일			
연장허가 신청 반출·입 연월일			
연 장 사 유			
기간 연장에 관한 협 약 내 용			
그 밖의 사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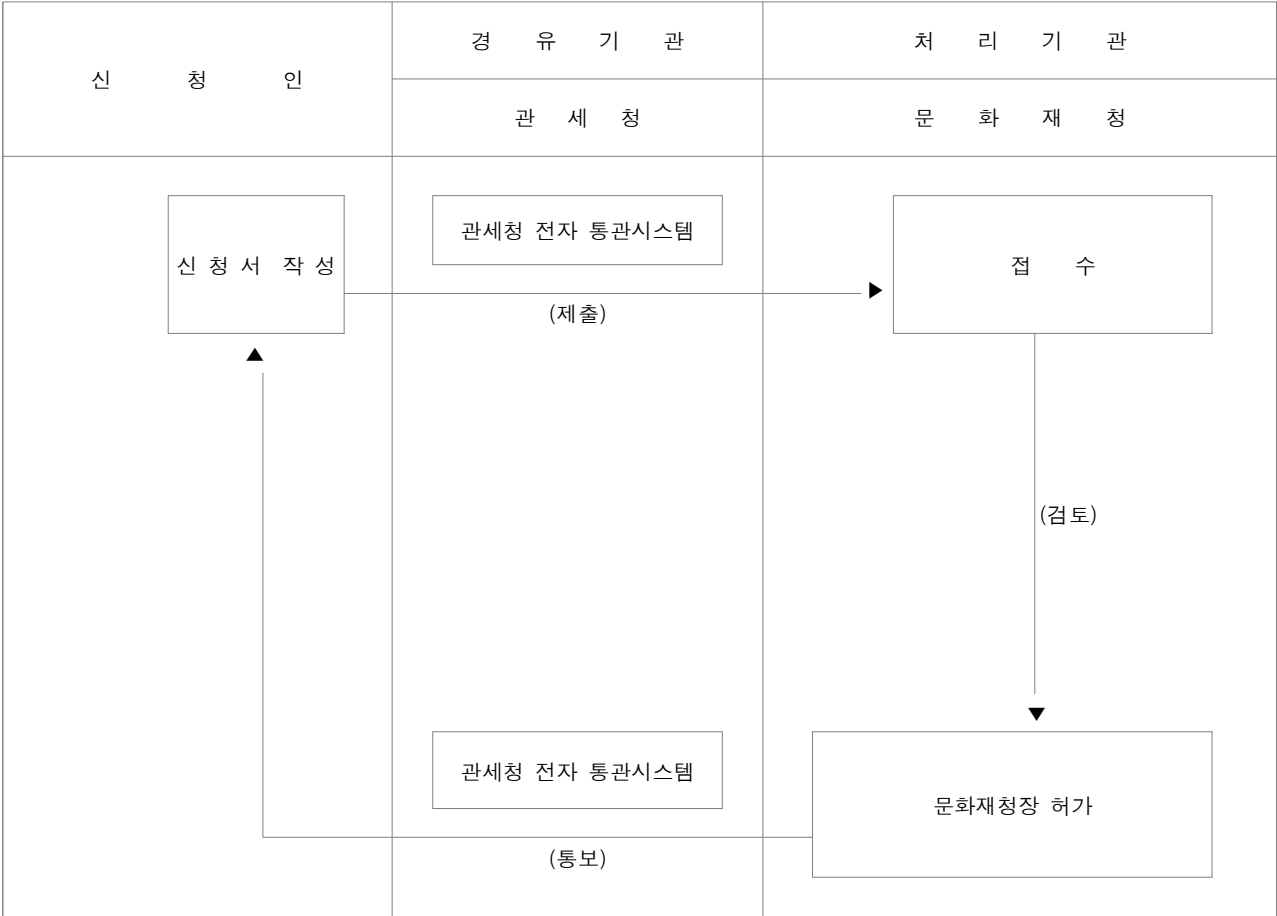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 목록

명	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당초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 목록

명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기관명)		
	주소		
대상 천연기념물	유형	명칭	
	규격	수량	
허가사항	개요		
	반출국(장소)		
	당초 반출기간(전시기간)	변경 반출기간(전시기간)	
	전시명		
허가조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기간 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행정사항

- 국외 반출된 천연기념물이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문화재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나.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에 따라 국외 반출된 천연기념물의 현황 및 보존·관리 상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국외 반출된 천연기념물을 허가된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않은 자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문화재는 몰수합니다.
- 국외 반출된 천연기념물을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내 반입 신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고서의 [허가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경과 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 목록

명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상 천연기념물	명 칭		
	유 형	수 량	
수출목적			
수출 대상 국가		대 상 기 관	
수출예정연월일		수 송 방 법	
수출 담당자	성 명		
	주 소		
수출 중 보호방법			
수출에 관한 협약 내용			
그 밖의 사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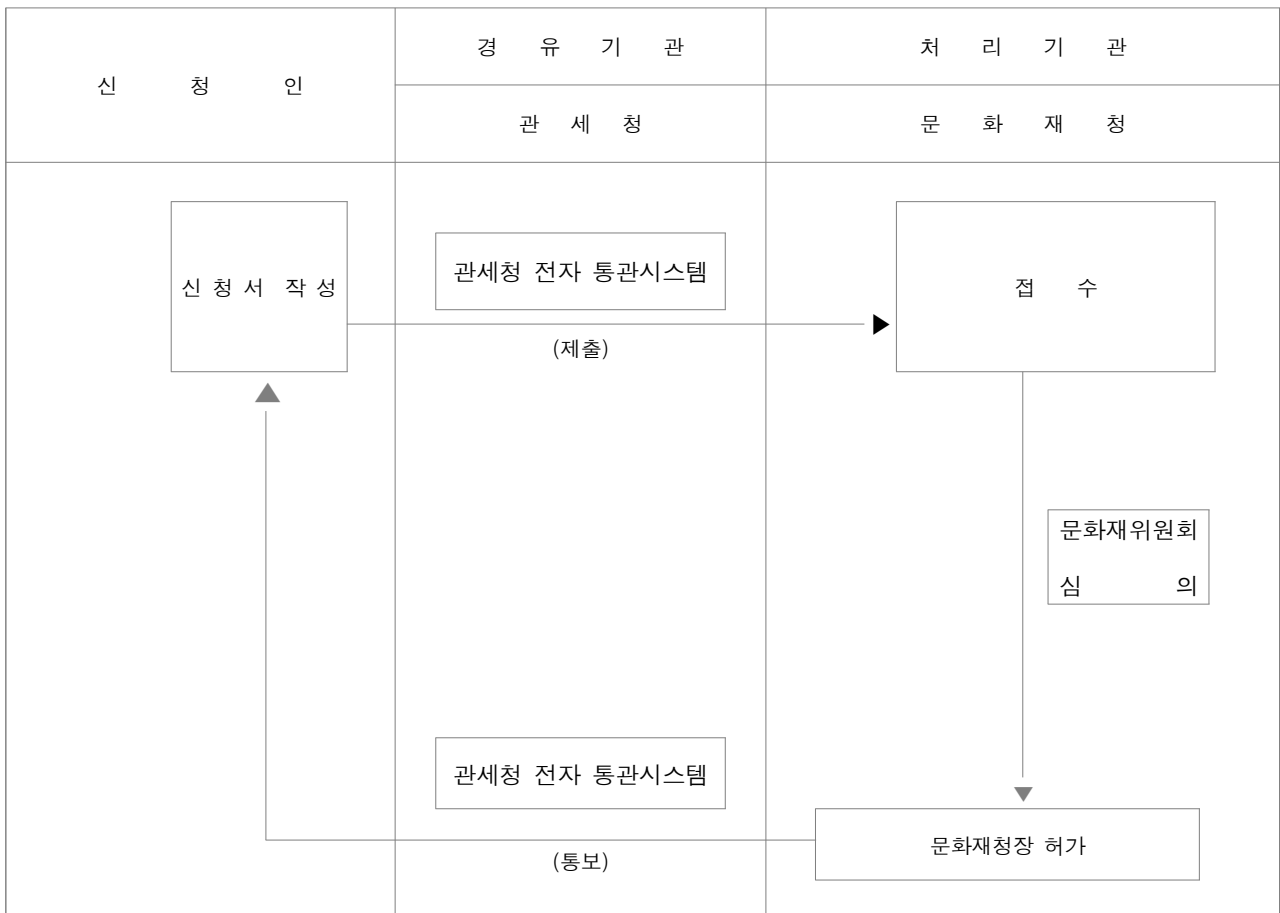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연구 및 전시) 계획서 1부 2. 현상변경(표본·박제) 허가서 또는 인공증식 증명서 사본 1부 3.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천연기념물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 목록

명	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명	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명	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명	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	
	주소	
대상 천연기념물	유형	
	명칭	수량
허가사항	개요	
	수출국(장소)	
허가조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의 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행정사항

관세청 수출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요건승인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 목록

명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량		
규격		
보관장소		
명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량		
규격		
보관장소		
명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량		
규격		
보관장소		
명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량		
규격		
보관장소		

210mm×297mm[백상지 (80g/㎡)]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연유산의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	(전화번호:)		
관 리 자	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 유	(선임·해임) 연 월 일		
그 밖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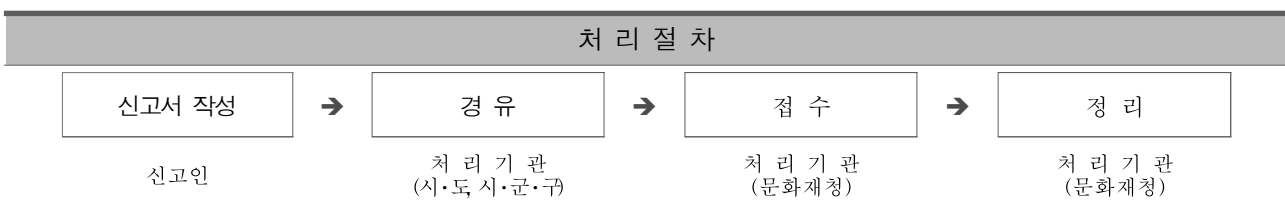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자의 []선임 []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자연유산의 명칭				종 류	수 량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보호구역·보호물					
소유자등	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변 경 사 유				변경 연월일	
그 밖의 사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신)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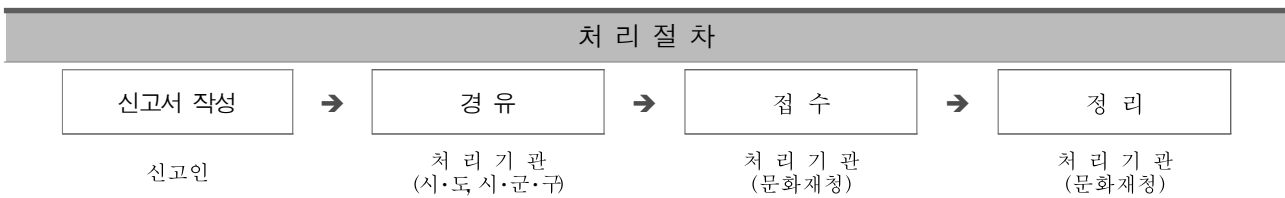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구) 성명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 소유자등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수 수 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자연유산의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보 호 구 역		지 목	지 적
변 경 사 유		변경 연월일	
변 경 내 용	신		
	구		
그 밖의 사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보관 장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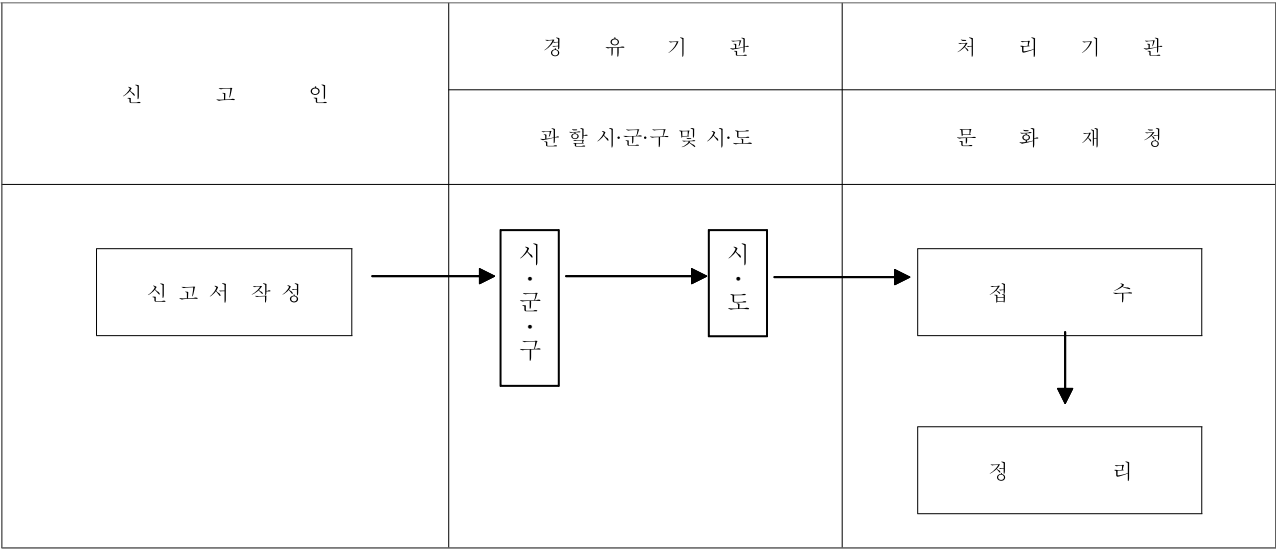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 관련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호물·보호구역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	------	-------------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자연유산의 명 칭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	수 량
----------------	-----

보호물·보호구역 명칭

신고내용	사 고 연 월 일
	사 고 내 용
	사 고 경 위
	조 치 내 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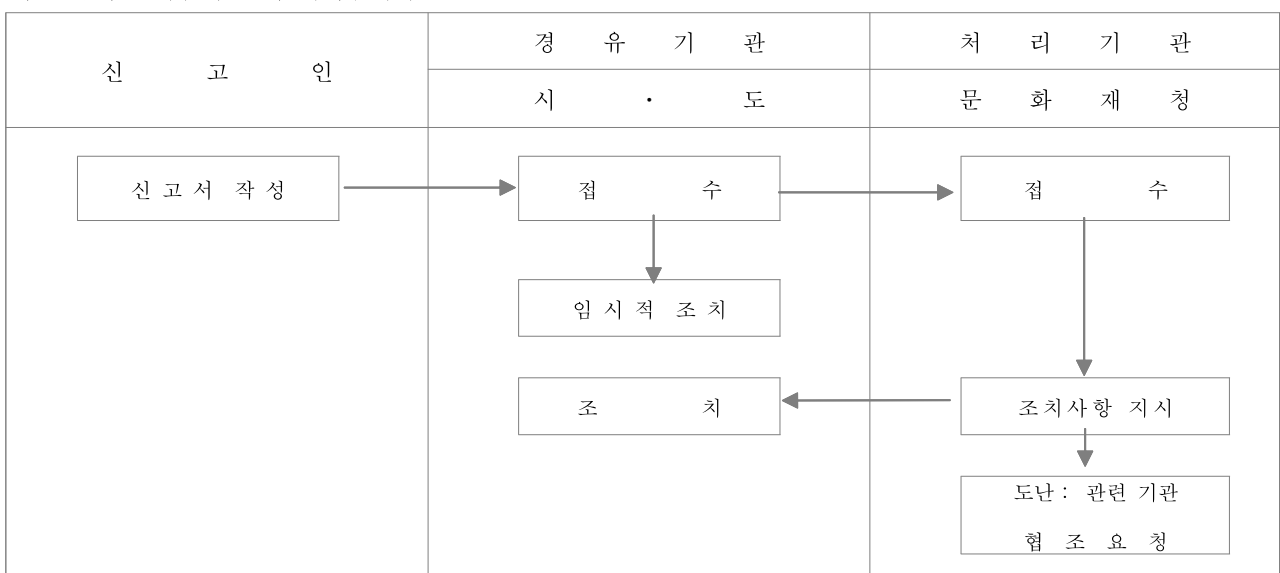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 관련 사진	수 수 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시·도 1일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 상 자연유산	명칭		종류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보호물					
공 사 내 용	명칭				
	내용				
착 공 연 월 일	. . .			준공(예정) 연월일	
허가, 명령 연월일				허가, 명령의 내용	
공 사 담 당 자	업 체 명		공 사 금 액		
	감독자명		원		
그 밖의 사 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6호·제2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현상변경 등의 []착수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수 수 료 없 음
------	---	--------------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성 명 (기관명)		생년월일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천연기념물 명칭			유형		수량
반출허가 내 용	문서번호			허가 연월일	
	허가조건				
반출·반입 연 월 일	반 출		반 입		
반입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보관장소	반 출 전				
	반 입 후				
천연기념물 현황					
그 밖의 사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6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동물·식물·광물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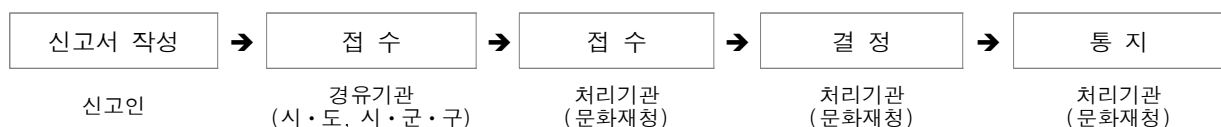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천연기념물 국내 반입 신고서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성 명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천연기념물 명 칭		유형	수량		
반 출 허 가 내 용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허가조건				
반 출 · 반입 연월일	반 출	반 입			
반입 · 출입 담당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보 관 장 소	반 출 전				
	반 입 후				
천연기념물 현황					
그 밖 의 사 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6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국내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관 세 청	문 화 재 청
신 고 서 작 성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접 수
	(제출)	

천연기념물 반입 신고 목록

명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천연기념물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천연기념물의 명칭		유형	수량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전화번호:)			
소유하게 된 경위				
그 밖의사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 부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일
신 고 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상 천연기념물	명칭	수량	
소재지 (보관장소)	(전화번호:)		
폐사일		전자행정 멸 실신고번호	
부검내용	착수일	완료일	
	장소		
	사유		
	결과		
그 밖의 사항	* 조치계획 등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 부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관련 사진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시·도 및 시·군·구)

처리기관
(문화재청)

처리기관
(문화재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일
신 고 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상 천연기념물	명칭	수량	
소재지 (보관장소)	(전화번호:)		
긴급조치 내용	일시		
	장소		
	사유		
	조치내용		
	결과		
사후처리 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관련 사진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신고인

처리기관
(시·도 및 시·군·구)

처리기관
(문화재청)

처리기관
(문화재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 고 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 천연기념물	명칭				
수입·반입 목적					
수출(반출) 국가			원산지		
수입 통관일					
동물 기본정보	보통명		학명		
	성별		연령		
	크기 * 길이, 무게 등				
	인식표(가락지 등) 번호 * 해당사항 있는 경우 기재				
보관(사육) 장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의 수입·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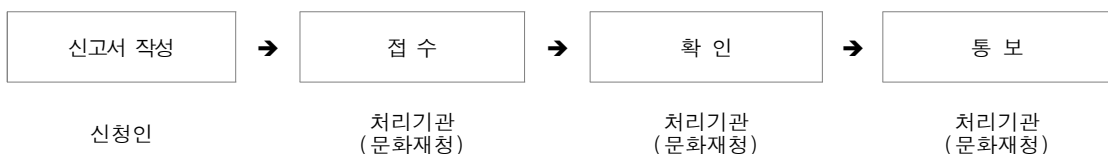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입·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원산지 증명서 1부. 3. 해당 동물의 사진(전후좌우의 전신사진 각 1부, 해당 동물의 종별 특성을 식별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 인식표가 있는 경우 해당 표식의 사진 일체)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대상 자연유산	명 칭		종 류		
소 재 지	(전화번호:)				
공 개 제 한 사 항	제한 사유				
	제한 기간				
	제한 지역				
출 입 허 가 신 청	출입 목적				
	출입 기간		출 입 자		
	출입 지역				
그 밖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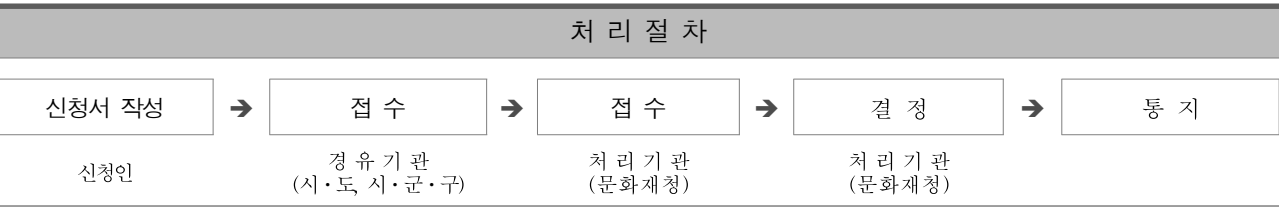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서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자연유산	명 칭	종 류	
	소 재 지		
허가 사항	출입목적		
	출입기간		
	출입지역		
	출입인원		
허가 조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공개 제한지역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작 인			

제 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

지정 자연유산 지 정 종 류 :

지 정 명 칭 :

지 정 수 량 :

지 정 일 :

지정받는 자 단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위 단체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작 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상

[illegible]

작성요령

1. 발급번호란에는 지정일 순으로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합니다.
3. 지정일란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앞쪽)

제 호
자연유산조사원 신분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 내에 촬영한 것)
성 명
문 화 재 청

60mm×90mm[백상지(120g/㎡)]

(뒤쪽)

자연유산조사원 신분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자연유산조사원임을 증명합 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 다. 2. 이 증은 앞면에 적힌 신분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천연기념물 조난·질병등 동물 치료결과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동 물 치 료 소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대 상 천 연 기 념 물	명	칭			
접 수	조 난 (질 병 등) 일		조 난 (질 병 등) 장소		
	조 난 (질 병 등) 원인		신 고 자		
	조 난 (질 병 등) 상황				
완 치	완 치 일		방 사 장 소		
	완 치 상 황				
폐 사	폐 사 일		폐 사 장 소		
	폐 사 원 인				
치 료 경 비	청 구 금 액 (원)		치 료 내 역		
조 치 의 건	※ 보고 내용별 조치계획 또는 처리의견 기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난·질병등 동물 치료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조난·질병등 동물의 사진 1장 2.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 각 1부(폐사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보고서 작성	➔	접 수	➔	통 보	➔	보 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대표자		처 리 기 관 (시장·군수·구청장)		처 리 기 관 (시·도지사)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210mm×297mm[백상지(80g/㎡)]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동물치료소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대상물 천연기념물	명 칭				
접 수	조 난 (질 병 등) 일		조 난 (질 병 등) 장소		
	조 난 (질 병 등) 원인		신 고 자		
	조 난 (질 병 등) 상황				
완 치	완 치 일		방 사 장 소		
	완 치 상 황				
폐 사	폐 사 일		폐 사 장 소		
	폐 사 원 인				
치 료 경 비	청 구 금 액 (원)		치 료 내 역		
조 치 의 건	※ 보고 내용별 조치계획 또는 처리의견 기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를 청구하오니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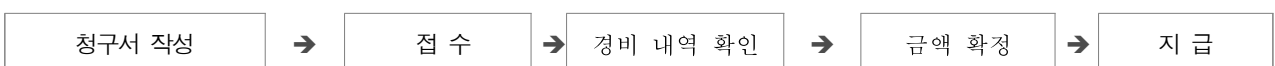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 의 사 회 장 귀하

첨부서류	1. 치료 경비 내역서 1부 2. 진료기록부 1부 3. 조난·질병등 동물의 사진 1장	수 수 료 없 음
------	---	--------------

처 리 질 차



동물치료소

처 리 기 관 : 수 의 사 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 지정 [] 취소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동물치료소	치료소명	지정일 또는 취소일
	주 소	
	대 표 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	
수 의 사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메일
	면허번호	면 허 일
그 밖의 사항 (지정 또는 취소 사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 지정 [] 취소 사실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또는 취소 통지 공문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보조금신청서)

사업명:

1. 자연유산 현황

가. 지정별: ○○(. . 지정)

나. 명칭:

다. 수량:

라. 소유자:

마. 관리자:

바. 관리단체명:

사. 소재지(보관 장소): (동·리·면지까지 기재)

아. 주요 연혁 및 특징:

자. 지정면적(보호구역 포함): m²(국·공유지: m², 사유지: m²)

○ 자연유산구역(지정구역): m²(국·공유지: m², 사유지: m²)

○ 보호구역: m²(국·공유지: m², 사유지: m²)

차. 서식지 등의 현황 및 주변 환경

※ 간략하면서도 사업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2. 연도별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실적

(단위: 천원)

연도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집행 상황 등)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

사업내용	사업비				신축내역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기타)		
계						

※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위치도·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 종합정비계획(문화재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교부 내역

(단위: 천원)

시도별	소재지	지정별	자연유산명	사업 내용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2. 교부 조건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작 인

()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회계연도: 년도(집행, 이월 구분작성)

[illegible]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		
자연유산 종류		관리번호 제 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유 형		
지 정 일		해 제 일
수 량 / 면 적		학명/크기
소 재 지 / 보 관 장 소		
서식지/번식지/ 도래지/군락지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 리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 리 단 체	주 소	
	단 체명	전화번호
점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 유		
내 용 (연 혁 , 유 래 , 전 설)		
현 황		

자연유산명 □□□□□□ 제 00호 □□□□□

관리 상황(현상변경, 보수·정비 등)

[illegible]

자연유산명 □□□□□ 제 00호 □□□□□

보 호 물

[illegible]

자연유산명 □□□□□ 제 00호 □□□□□

부속물

[illegible]

자연유산명 □□□□□ 제 00호 □□□□□

도면/사진

제 목		종 류		작성일자	
-----	--	-----	--	------	--

제 목		종 류		작성일자	
-----	--	-----	--	------	--

세목별 세부사항 부록

세목번호	명 칭	유 형	학 명	크 기	수 량	그 밖의 특징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목록

자연유산 종류:

[illegible]210mm×297mm[백상지(80g/m²)]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소재지(시·도)별 목록

소재지별: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80g/㎡)]